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2
----------	-----

2017. 4. 28.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2017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17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17년 4월 21일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숙애 의원)

가. 제안이유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과 역기능 예방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을 개정 함(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확대 및 체계화 함(안 제5조)
-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품 구매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함
(안 제6조)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 사이버유해사이트 차단 규정을 명료화 함
(안 제10조~제11조)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
함(안 제14조)
-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과 역기능 예방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역기능 예방 제품 구매절차와 방법을 강화하였으며, 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 담당 전문인력 배치 문제 등을 개선·보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과 역기능 예방 관리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2조에 본 조례 개정에서 강조한 핵심사항인 ‘정보화 역기능’ 과

‘기술적 안전조치’의 개념 정의를 추가한 것은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주요사항에 대한 의미전달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5조에 매년 수립·시행해야하는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정책수립과 세부 사업추진을 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시행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확립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 함양 및 정보화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도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 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비용을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용 컴퓨터”란 도내 학교·기숙사·도서관·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이 점유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
4. “인터넷 중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에서 정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게임 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을 말한다.
6. “사이버 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2조제4호부터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10조와 제11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9.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현황을 자동 관리하고, 정보화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이 겪을 수 있는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인터넷사용료를 지원받은 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이하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라 한다)와 학생용 컴퓨터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2. 학생용 컴퓨터의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4조제1호의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학생·교직원 대상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컴퓨터 게임·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및 정보화 역기능 상담·치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절차와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규격과 구매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기술평가에 객관적인 산출방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차단하는 음란동영상, 음란·유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불법·유해사이트(이하 “사이버음란물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개수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사이버음란물 데이터베이스 차단 기능에 대한 규격을 매년 강화 시켜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 데이터베이스 중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제3항에 따른 규격강화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 데이터베이스의 수량과 그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품구매 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 하여야 한다.

제7조(컴퓨터·소프트웨어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를(이하 이 조에서 “컴퓨터”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 컴퓨터의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 사용료

③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의 사용기간 등을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자동 추출하여, 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사용연수의 역순으로 해당 지원 가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컴퓨터 지원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추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사업자 변경)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의 해당 사업자 변경은 학년 초 해당 기관 또는 관련시스템의 교육비 신청기간과 9월 중 변경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확인을 거쳐 언제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하던 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한 때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때

제9조(지원중단 동의)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호의 교육정보화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인 학생에 해당한다)로부터 온라인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2.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사용기간의 자동추출 거부
 3. 컴퓨터 게임 · 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 · 치유서비스의 거부
 4. 정보화 역기능 예방 ·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거부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안전 조치 설치를 거부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추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터넷 · 게임 중독 예방 ·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와 학생용 컴퓨터의 인터넷 · 게임 중독 예방 · 관리를 위한 제2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24시간 학습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②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에 온 · 오프라인 게임과 인터넷의 일일 최대이용 및 심야이용제한 시간을 자동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와 기숙사 등 학교 컴퓨터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게임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이버유해사이트 차단)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와 학생용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시큐어소켓레이어(SSL: Secure Socket Layer) 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 접속 프로그램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와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이버유해사이트가 기술적 안전조치로 차단될 경우 컴퓨터 모니터에 차단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구현할 경우 사생활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HTTPS 등의 통신규약을 사용하는 기술 및 사이트를 평문으로 복호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조(통합관리시스템) ① 교육감은 지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현황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해야 한다.

1.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자 및 지원컴퓨터 현황
 2. 제7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현황
 3. 제7조제3항의 컴퓨터 사용기간 및 CPU종류·현황
 4.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현황
 5.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수작업업무 전산화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조회·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2. 교육감이 미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정보
3. 학생별 컴퓨터·컴퓨터 게임·인터넷의 이용시간
- ④ 교육감은 예산절감을 위해 기술적 안전조치 공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 등) 교육감은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위 및 자격을 보유한 교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해당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공학,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을 전공한 석·박사 학위 보유자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역기능 예방 사무담당자는 3년 이내에 상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관리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 한다.

1.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 전문기관·단체·학계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교육기본법 (법률 13003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 교육법(법률 12338호 일부개정 2011. 01. 28.)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61호 일부개정 2015. 01. 06.)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 청소년 보호법(법률 1269호 일부개정 2014. 05. 28.)

제2조(정의)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3344호 일부개정 2015. 06. 2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12761호 일부개정 2014. 10. 15.)**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12844호 타법개정 2014. 11. 19.)**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제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삭제 <2016.5.29.>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22.>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11849호 타법개정 2013. 06. 05.)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조약 제1072호 1991.12.20. 발효)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6.>

②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8.6.>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